

양계업의 세무회계



윤 석 곤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제1편 농업과 회계

제2편 양계업의 회계처리

제3편 양계업의 경영분석

제4편 양계업의 원가계산

제5편 양계업의 세무회계

1.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화이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경영성과를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절차로 조세를 부과할 과세소득의 산정이 목적이다. 이러한 세무회계의 계산은 “익금 - 손금 = 소득”이라는 등식에 의해 계산된다. 기업회계에 의해 순이익이 계산되면 세무상의 요구에 의해 차이를 조정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이러한 조세의 구분은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를 처리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하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2. 소득세란?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세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

표 1. 소득세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0
4,600만 이하	15	1,080,000
8,800만 이하	24	5,220,000
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	38	23,900,000

다. 현행세법에 의하여 소득을 크게 나누면 종합소득과 분리소득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이 다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 하며 소득내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적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하는 분리소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기업주의 자본을 인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되므로 인출금계정 또는 가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3. 법인세란

법인은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원천징수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같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는 영농법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익금

은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국가보조금 및 자연재해 보상금 등도 익금에 포함되며, 손금은 농산물 등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4.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는?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5.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공급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에 과세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마진(margin)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형식상으로 기업이 납세의무자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최종소비자가 세 부담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매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금금(매입세액)계정으로 처리하고, 매출시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매출세액)으로 처리한 후 납부 시는 부가가치세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대금금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제1기 1/1~06/30(중간예납기간 1/1~03/31)
 제2기 7/1~12/31(중간예납기간 7/1~ 9/30)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농가레스토랑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8/108)을 세액공제 해준다. 제조업인 농산물가공의 경우 매입액의 일정분(2/102)을 세액공제 해준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10%-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 신고	1.1~6.30 사업실적	7.1~7.25	7.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2)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3%를 (연간 500만원 한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액부징수 : 간이과세자로서

반기 1,200만 원 이하는 부가세가 없다.

7.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한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액×10%-매입세액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예정 신고	1.1~3.31 사업실적	4.1~7.25	7.1~9.30 사업실적	다음해 4.1~4.25
확정 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8. 농업관련 부가가치세를 알아보자?

1) 농산물 가공 생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거래되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세금인 매출세액과 공급가액을 매출이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산업인 농산물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를 면세적용항목이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제도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에도 과세항목은 매입가액의 10%인 매입부가세와 매입가액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시 농산물 등을 구입 시에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데 이를 면세항목이라 한다.

3) 영세율 적용 품목의 경우

국가에서 농업관련 지원 일부품목에는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하는 영세율 항목도 존재한다. 즉,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농업협동조합, 등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공급하는 자재로서 아래와 같은 품목을 말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임업용기자재로 대통령이 정한 것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은 제외)
친환경자재(천적, 키토산, 목초액)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아래의 식료품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농업등 관련 기자재 등은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종류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 ①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뚫지리용, 발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 ②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 하우스에 한한다)
- ③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④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 ⑤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 ⑥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 ⑦ 담배건조용 차광망
- ⑧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 ⑨ 농업용 배지 (양액, 버섯재배용에 한한다)

9. 취득세와 재산세는?

취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登記할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하고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조세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토지·건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10. 소득세 원천징수란?

소득세 원천징수는 이자배당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이것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금액에서 해당 소득세를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득세 원천징수라 한다.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에 종업원이 부담할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것을 급여, 상여금 등에서 공제하였다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1) 끝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 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같음하게 된다.

그리고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일당직 등 일용근로자에 일당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양계**